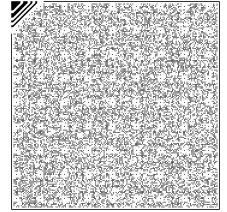




질병관리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 개정·공포 알림

1. 의료방사선과-37(2021.01.06. 시행), 의료방사선과-168(2021.01.15. 시행), 의료방사선과-1448(2021.05.10. 시행) 관련입니다.
2. 「의료법」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(21.6.30. 시행)에 따라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 고시가 개정·공포(2021.7.23.)되어 알려드리오니, 귀 협회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주일 이내 확인 가능

붙임 1.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 전문. 끝.

질병관리청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치과위생사협회, 대한방사선사협회

보건연구사	길종원	공업연구관	이병영	의료방사선과	전결 2021. 7. 26.
				장	이현구

협조자

시행 의료방사선과-2251 (2021. 7. 26.) 접수

우 28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10 의료방사선과 / <http://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7512 팩스번호 043-719-7519 / yaeun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궁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